

실손의료보험 개인실손전환(단체→개인) 특약

제 1조 [목적]

제 2조 [개인실손전환에 관한 사항]

제 3조 [기타 사항]

실손의료보험 개인실손전환(단체→개인) 특약

제 1조 [목적]

이 특약은 단체실손의료보험(이하 ‘단체실손’이라 합니다)에만 가입된 피보험자 등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이라 합니다)으로 전환(이하 ‘개인실손전환’이라 합니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어해설

[단체실손의료보험]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개인실손의료보험]

노후·유병력자·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한다.

제 2조 [개인실손전환에 관한 사항]

①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개인실손전환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전환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전환을 청약한 경우 청약 당시 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으로 전환되며, 판매 중인 개인실손이 없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는 개인실손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청약일 현재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는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전환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1. 단체실손에 가입한 단체의 퇴직예정인 임직원이거나 퇴직자인 경우 (다만, 퇴직예정인 임직원은 퇴직예정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직전 5년간 연속으로 단체실손의 피보험자인 경우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 계약당 1개월 이내이고,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며, 단체실손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금번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개인실손전환 청약일까지 기간은 제외합니다)



설명

[보유하는 개인실손]

회사가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한 경우 가장 최근에 판매했던 개인실손을 말한다.

[단체실손 종료일]

개인실손전환 계약자가 금번 개인실손전환 청약일 이전에 단체실손에 가입·종료한 이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 금번 개인실손전환 청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단체실손 종료일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14.10.16.이후 단체실손을 ‘비실손보장형(정액형)’으로 가입한 경우 ‘비실손보장형(정액형)’으로 가입한 기간은 단체실손의 가입기간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인실손전환 직전에는 단체실손의 ‘실손보장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

다. 다만, 단체실손을 ‘비실손보장형(정액형)’으로 가입한 임·직원이 실손의료보험 개인실손 전환 제도 시행 이후부터 단체보험 보장기간 종료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손보장형’으로 변경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실손전환이 가능하며, 개인실손전환 계약자가 ‘비실손보장형(정액형)’에서 보장받은 담보와 유사한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으로 전환됩니다.

예시

비실손보장형(정액형): 상해·질병 입원일당 담보 → 개인실손: 상해·질병 입원담보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실손전환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개인실손전환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다수의 회사가 단체실손을 분할하여 인수한 경우 계약자는 해당 회사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개인실손전환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의 개인실손전환 청약을 받고, 개인실손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의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개인실손전환이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단체실손이 개인실손으로 전환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⑥ 계약자는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인실손전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 약관을 따릅니다.

⑦ 회사는 계약자가 개인실손전환을 청약할 때에 이 특약의 중요한 내용(제9항 내지 제11항 포함), 개인실손전환 전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및 개인실손전환 시 유의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청약 후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⑧ 회사는 개인실손전환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또한, 회사가 개인실손전환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별도 심사 없이 전환 직전에 가입한 단체실손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 중 동일한 조건이 없어 단체실손과 차이가 가장 작은 개인실손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1. 보장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자기부담금

⑩ 회사는 계약자가 개인실손전환 청약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단체실손의 보험금을 200만 원(단체실손에서 수령한 보험금액과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합산)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에 대하여 개인실손전환 청약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 없이 개인실손으로 전환합니다.



용어해설

[10대질병]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⑩에이즈(AIDS) 및 HIV 보균

⑪ 계약자가 제9항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제10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개인실손전환을 결정합니다.

⑫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실손전환을 청약할 때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제10항 포함)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개인실손전환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 3조 [기타 사항]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실손전환 후 개인실손의 약관을 따릅니다.
- ② 회사는 개인실손전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특약을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개인실손전환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